



# 2022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안내

학생의 안전과 준비가 최우선이 되는 현장실습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실습운영 매뉴얼  
2022. 06. 16.

# CONTENTS

2022년 개정 직업계고 매뉴얼  
실용신학교 현장실습  
규정

0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02.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03.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04. Q & A

학생의 안전과 준비가 최우선이 되는 현장실습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동 매뉴얼의 변화

## 2022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21.12.)」에 포함된 사항은 노란색 음영 처리(9개)

연번	분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현장실습 매뉴얼 개정 체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을 차수 체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년도 기준 개정(매년 1회 개정)</li> <li>※ 예) 2021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수 기준 개정(1년에 2회 이상 또는 2~3년에 한 번 개정 가능)</li> <li>※ 예) 2022년 1차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li> </ul>
2	현장실습 매뉴얼 성격	매뉴얼 성격을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에서 만든 중앙단위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하여 만든 공통 가이드라인</li> </ul>
3	현장실습 유형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체 채용약정형</li> <li>※ 실제로 채용이 '약정'되지 않는 문제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체 채용형</li> <li>※ 유형 구분에 방점</li> </ul>
4	현장실습 유형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기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월 이상 운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월로 제한</li> <li>※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할 경우 연장 가능(산업체 채용형과 동일)</li> </ul>
5	현장실습 유형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채용전환 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교육청의 별도 기준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채용연계를 전제로 운영되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②4주 이상을 실시한 경우 ③수업일수 2/3출석 이후 ④선도기업에 채용전환 가능</li> </ul>
6	현장실습 유형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전공전환 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전공심화' 과정, '전공전환' 과정으로 구분되며, - 채용전환으로 이어지는 '전공전환' 과정의 경우, 학생 모집단계에서 전공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절차(적성검사, 직무평가 등)를 거쳐야 함</li> </ul>
7	현장실습 유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아우스빌동 현장실습 제도 적용 여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 모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 제도 미적용</li> <li>- 근로기준법, 일학습병행법 등 별도 법령 및 규정 적용</li> </ul>

# 2022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21.12.)」에 포함된 사항은 노란색 음영 처리(9개)

연번	분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8	현장실습 유형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현장실습 제도 적용 여부 명확화	◦교내 프로그램을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간주	◦실제 기업으로 나가서 하는 실습만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인정 ◦교내 프로그램을 산업체 전문가가 학교로 와서 지도하는 경우, ‘교내 현장실습’으로 처리 가능
9	현장실습 유형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채용전환 기준 명확화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생략하고 채용전환 가능(예외 인정)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4주간 참여 시 채용전환 가능(예외 불인정)
10	현장실습 유형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현장실습 제도 적용 기준 명확화	◦공공기관·공기업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운영 ◦공공기관·공기업은 입사 가능 시기에 제한이 없고(예외 인정), 부서관은 수업일수 2/3 시점에 입교가 가능하는 등 혼재	◦연계교육형으로 처리 - 연계교육형 협약서 작성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이상 4가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계교육형 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 가능 ◦수업일수 2/3 전까지는 ‘연계교육형’, 수업일수 2/3부터는 채용전환 적용 ※ 단,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할 경우 여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과 마찬가지로 연장 가능
11	현장실습 유형	해기사, 간호조무사, 말조련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기준 명확화	◦3개월 초과 가능(예외 인정)	◦연계교육형으로 처리 ※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할 경우 연장 가능(산업체 채용형과 동일)
12	현장실사	모든 기업 대상 사전 현장실사 실시	◦선도기업에 한해서 사전 현장실사 실시	◦참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 실시
13	현장실사	현장실사 시 교원(취업지원관) 동행 불요	◦현장실사 시 노무사와 교사(취업지원관) 동행 필수	◦노무사 또는 산업안전전문가 단독 실시 가능
14	현장실사	현장실사에 노무사 외 산업안전전문가 참여	◦교원 외 노무사만 현장실사 참여	◦노무사 외 산업안전전문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현장실사 참여

# 2022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21.12.)」에 포함된 사항은 노란색 음영 처리(9개)

연번	분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5	현장실습 수당	현장실습 수당 4,400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에서 부담하는 현장실습 수당 7,400원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산정)</li> <li>※ 기업:교육청:국고 = 70:0: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에서 부담하는 현장실습 수당 4,400원(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산정)</li> <li>※ 기업:교육청:국고 = 40:30:30</li> </ul>
16	현장실습 운영 위원회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불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포함</li> </ul>
17	현장실습 운영 위원회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운영 기준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운영 기준 명시</li> <li>- (구성) 노무사 포함 5인 이상</li> <li>- (정족수) 구성인원의 2/4, 노무사 필참*</li> <li>* 단, 서면 의견으로 대체 가능</li> <li>- (의결) 기업 적합 여부, 실습기간(그 외 의결 불가)</li> </ul>
18	현장실습 서류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필수 서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도기업 신청 시에만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제출(학교→교육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기업에 대해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를 작성하고, 기업의 적절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현장실습 필수 서류에 포함)</li> <li>- (참여기업)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제출</li> <li>- (선도기업)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에 제출</li> </ul>
19	현장실습 서류	현장실습 필수 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 필수 서류</li> <li>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li> <li>③ 학부모 동의서 ④ 학생 실습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 필수 서류</li> <li>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③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li> <li>④ 학부모 동의서 ⑤ 학생 실습일지</li> </ul>
20	선도기업 지정	선도기업 자동인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부처·지자체 선정 기업, 도제기업, 금융 기관, 대기업 등 선도기업 자동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기업은 예외없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승인을 거쳐 선도기업으로 인정</li> <li>※ 2024년 12월 31일까지 선도기업 인정</li> </ul>
21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자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기업 책임자 각1명 지정</li> <li>※ 책임자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에 서명, 개발 수당(5만원 내) 수령</li> </ul>

## 2022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21.12.)」에 포함된 사항은 노란색 음영 처리(9개)

연번	분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2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지난해와 동일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수당 미지급	◦지난해와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수당 지급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난해와 동일한 경우 개발 수당 미지급
23	사전교육	실습직전 특별교육 운영(필수 이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주관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온라인 교육만 필수 이수	◦온라인 교육 외 실습직전 특별교육* 필수 이수 * 하이파이브 온라인 교육(개발 중), 노무사 방문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셋 중 택1
24	순회지도	현장실습생에 대해 SNS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상시 모니터링 없음	◦상시 모니터링 의무화 ※ 단체톡, 설문조사 프로그램 등 활용
25	채용전환	현장실습 참여 기업과 다른 기업으로 채용전환 불가 명시	◦기준 모호	◦A기업에서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참여하고, B기업에서 동일한 직무를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채용전환은 불가 - B기업에 채용전환을 하기 위해서 4주간의 현장실습을 다시 이수해야 함 ※ 비록 동일한 직무일지라도 B기업의 환경, 장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응기간 필요
26	평가 보고회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필수화	◦평가보고회 권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보고회 필수 실시

학생의 안전과 준비가 최우선이 되는 현장실습

#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 01

## 현장실습 제도의 이해

###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 제공

(학생) 일 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진로 희망에 따라 취업 등 사회로 진출  
 (학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진로 선택기회 강화  
 (기업) **재교육 부담 없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재 채용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학생의 사회 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인프라 확충  
 우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실습 기회 확대(선도기업 '18년 8천개 → '22년 30천개)

#### 학생 안전 권익보장 강화

현장실습생 안전·권익보호 강화  
 현장실습 운영·관리 내실화

####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

직업계고 전환 학기 운영  
 다양한 직업 교육 기회 제공

#### 현장 실습 지원 인프라 구축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  
 현장실습 안착을 위한 법령 정비

#### 운영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

현장실습 운영절차 간소화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개선

구분	근로중심 현장실습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연계	자율(근로중심)	실무과목과 연계학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기간	6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수업일수 1/3범위 이내)
운영 형태	조기 취업	취업 준비과정
프로그램	없음	학교·기업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기업현장교사	없음	기업현장교사 지정 및 지도 책임 부여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혼용	현장실습표준확약서
신분	학생, 근로자 혼용	학생
급여/수당	급여 지급	현장 실습 수당 지급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근로기준법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근로기준법 등 준용)

## 학습중심 현장실습 의미



실습생 = 학생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 획득

실무능력 습득을 위한 **능동적 참여**와  
권익침해 등에 대한 **대응역량 배양**



기업 = 기업현장 교사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육성

미숙련자 현장 적용을 위한 배려와  
**적극적 책임의식 확산**

예산 지원 및 규·법령 정비 등 **인프라 구축**

## 현장실습의 개요



### 현장실습의 개념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의미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의 7, 법률 제18425호)



### 현장실습의 의미

-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습득**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현장 전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습득
- **현장 업무처리 능력 배양** : 현장에서만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취직 전에 경험함으로써 현장의 업무처리 능력을 조기 배양 할 수 있음
- **맞춤형 인재로 성장 기회 제공** : 개인별 맞춤형 현장실습을 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취업 기회 제공** : 채용 약정 방식으로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에 취업 기회가 제공됨

## 현장실습의 특징



### 현장실습의 특징

- **교육적 기능이 우선**
  - 현장실습생은 '전공 관련 실무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자' 임
  - 현장 실습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현장 직무 능력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직무 배정**
  -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실무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배정하고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제공(비 전공분야, 단순 업무 지양)
- **현장에서 교육·훈련을 제공 할 전담 지도자 배치**
  - 현장 실습생이 산업체 현장에 배치된 후에는 교육·관리를 담당할 전담 지도자(담당자)가 배치 되어야 함
-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 현장실습생의 선발-배치-교육-평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함

## 현장실습의 특징



### 현장실습의 특징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 제7조(현장실습) : 직업계고에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가능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8-150호)에도 비슷한 내용이 명시됨

- 제7조의2(현장실습운영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함

-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과 교육 프로그램은 정공과 연계되어야 함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 현장실습 계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해야 함

\* 주요 포함 내용 :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 제9조2(현장실습 시간) :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 현장실습 전 안전교육 필수(학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실습생이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으로 규정

- 재해 시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에 준하여 보상함(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 매뉴얼 개정 체계 및 성격 변화



### 매뉴얼 개정 체계 변경

- 매학년 기준 개정(매년 1회 개정)
- 차수 기준으로(1년에 2회 이상, 2-3년에 1번 개정 가능)



### 매뉴얼 성격 변화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통 가이드 라인

## 현장실습 주요 변경 사항 안내 (현장유형 및 세부사항)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명칭 변경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변경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기간 제한	◦ 3개월로 제한 ※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할 경우 연장 가능(산업체 채용형과 동일)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채용전환 기준 명확화	◦ ①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채용연계를 전제로 운영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② 4주 이상을 실시한 경우 ③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④ 선도 기업에 채용전환 가능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전공전환 기준 명확화	◦ 전공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단, 채용전환 시 ① 전공이 일치하거나 ②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절차(적성검사, 직무평가 등)를 거쳐야 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아우스빌등 현장실습 제도 적용 여부 명확화	◦ 현장실습 제도 미적용 - 근로기준법, 일학습병행법 등 별도 법령 및 규정 적용
해기사, 간호조무사, 말조련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기준 명확화	◦ 연계교육형으로 처리 - 시·도교육청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3개월을 초과 하는 기간에 대한 검토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채용전환 기준 명확화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4주간 참여 시 채용전환 가능(예외 불인정)

## 현장실습 주요 변경 사항 안내 (현장유형 및 세부사항)

###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현장실습 제도 적용 여부 명확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내 프로그램을 산업체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간주</li> <li>교내 프로그램을 학교 교사가 지도 가능</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내 프로그램 ⇒ '교내 현장실습'</li> <li>기업 현장 파견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적용</li> <li>학교 교사가 교내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은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프로그램을 '교내 현장실습'으로 처리하므로, 산업전문가가 지도해야 함</li> </ul> </li> </ul>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현장실습 제도 적용 기준 명확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공기업은 현장 실습표준협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운영</li> <li>공공기관공기업은 입사 가능 시기에 제한이 없고 예외적으로 부서관은 수업일수 2/3 시점에 입교가 가능한 등 혼재</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교육형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교육형 협약서 작성</li> <li>-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이상 4가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계교육형 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 가능</li> </ul> </li> <li>수업일수 2/3 전까지는 '연계교육형', 수업일수 2/3부터는 채용전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7월 중순부터 입사/입교 가능</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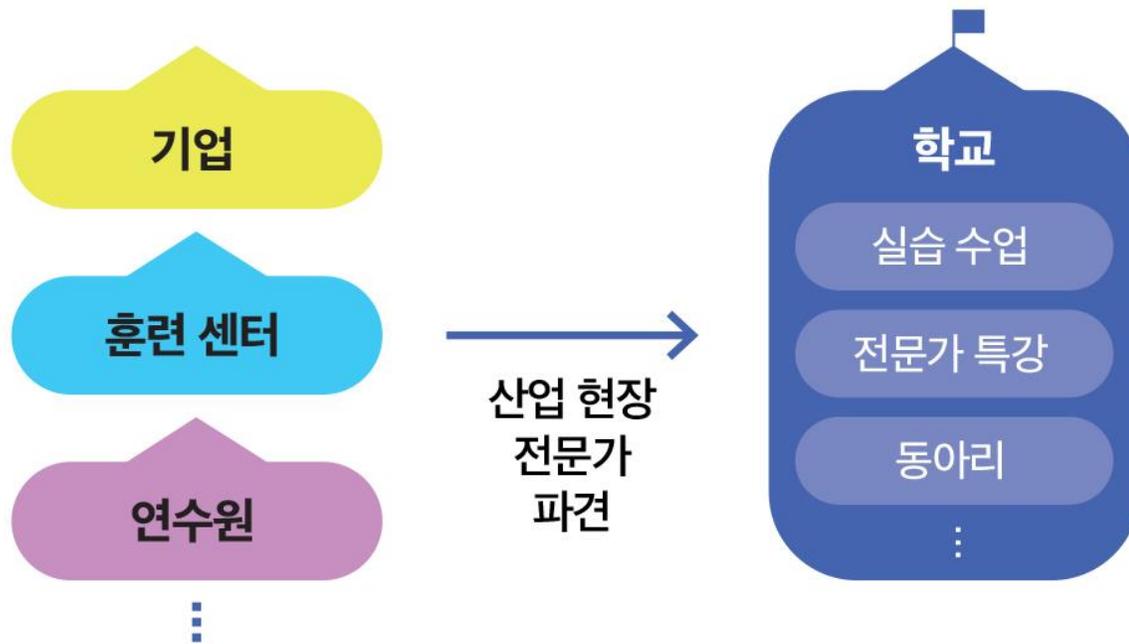
## 현장실습 유형

구분	유형	세부 활동 내용	실시시기
교내 활동	교내 현장실습	◦ <b>산업현장 전문가</b> 학교로 찾아가 지도하는 현장실습	1~3학년
교외 활동	산업체 체험형	◦ <b>산업현장</b> 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실습 ※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	1~3학년
	연계 교육형	◦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b>연계</b> 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 ※ 공동실습소,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	<b>3학년</b>
	산업체 채용형	◦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 활동하는 현장실습	3학년

### 주요 변경 내용

- 교내 현장실습의 세부 활용내용 변경 ⇒ 전문가에 의한 교내 교육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의 실시시기 변경
- 산업체 채용약정형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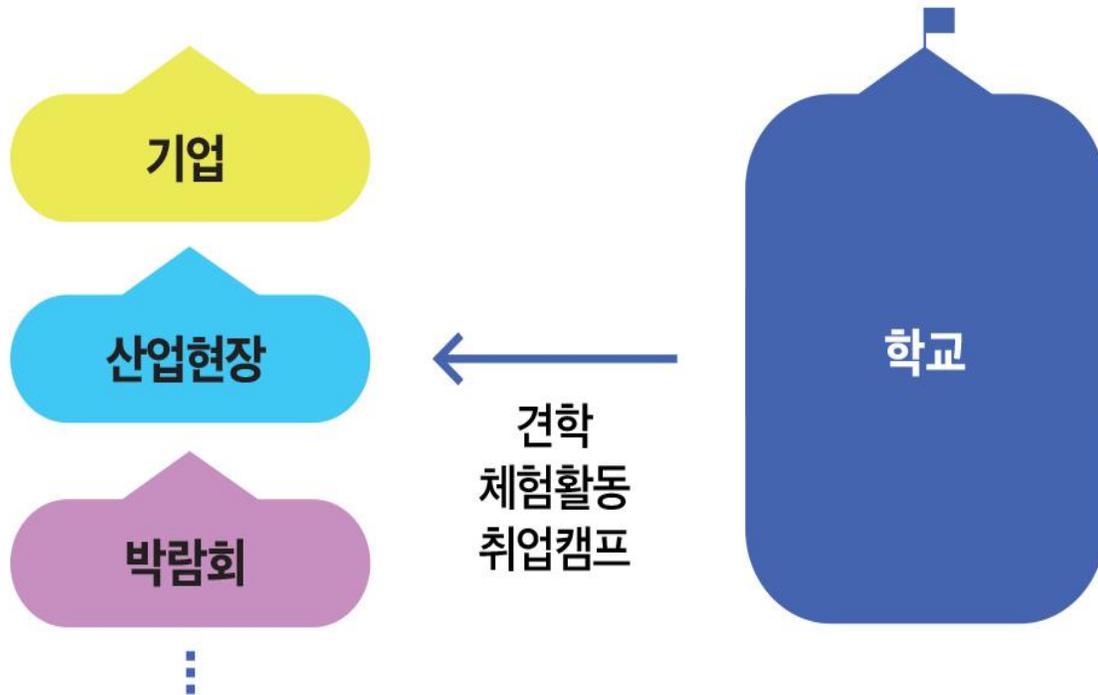
## 교내 현장실습



### 유형 설명

-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실습지도
- 학교 실습수업 중 일부를 집중지도
- 전문가 특강, 학생 동아리 지도
- 중앙/시도 취업지원센터에서 산업현장 전문가 매칭 및 파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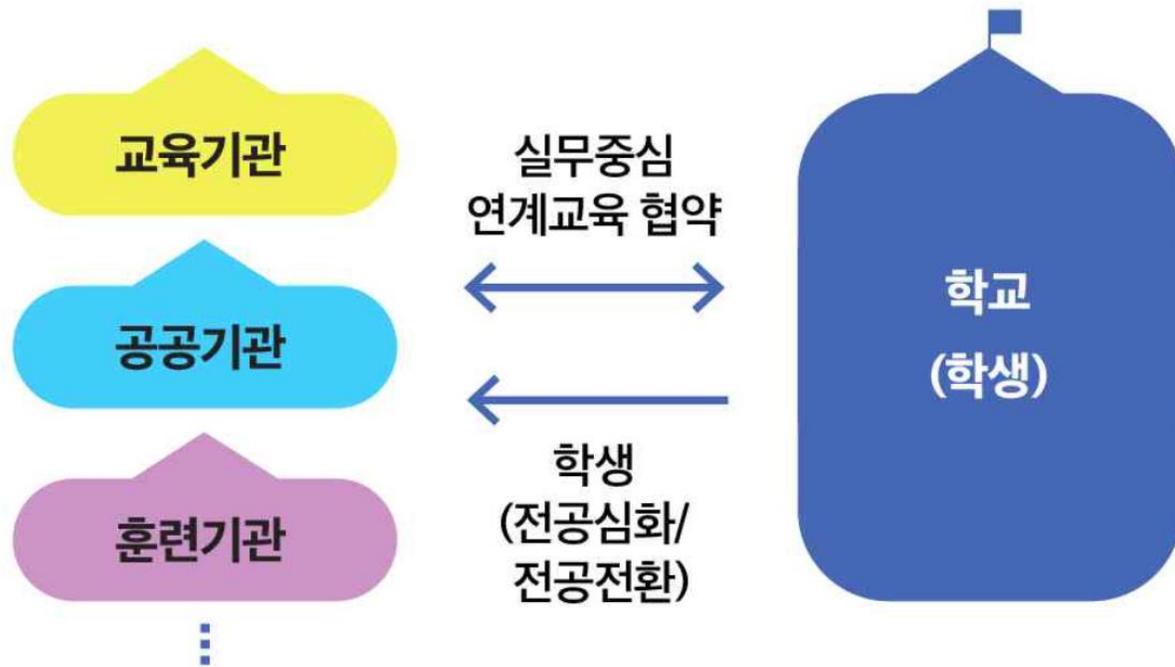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 유형 설명

- 학생이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
- 산업현장 견학, 산업박람회 참여, 기업 연계 취업캠프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안함
- 비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
- 출결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각종 체험활동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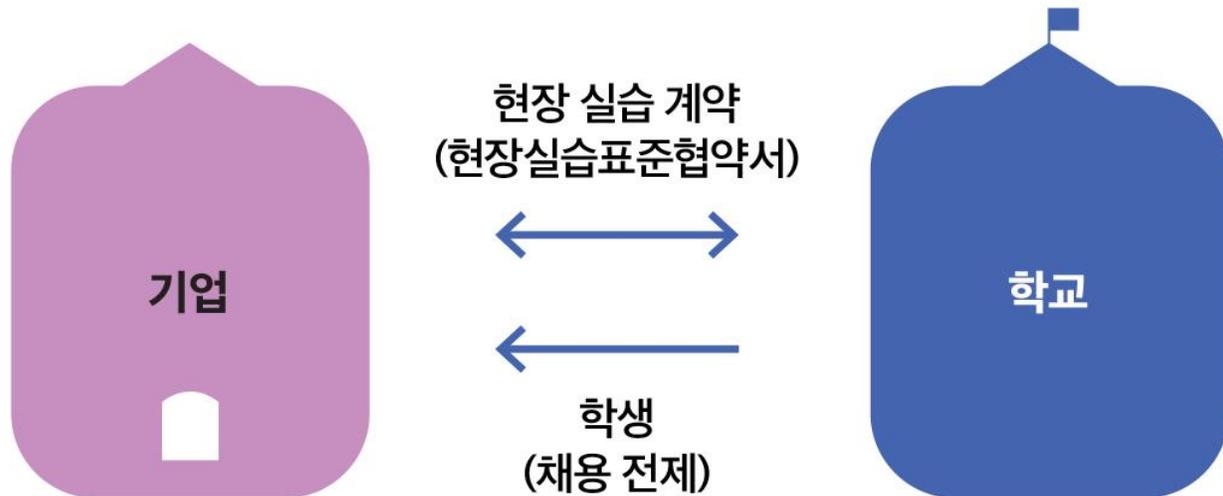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 유형 설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과 협약, 실무중심 전공심화교육 또는 전공 전환과정을 운영
- 전공 전환 과정의 경우 전공과 달라도 참여 가능
-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을 거쳐야 채용전환 가능
- 운영은 총 3개월 내에서 연중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 유형 설명

- 학생의 전공(부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하여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에 등재
- 총 3개월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운영 가능)
-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3개월 내에서 별도의 현장실습 기간을 정하여 운영 가능

## 현장실습 유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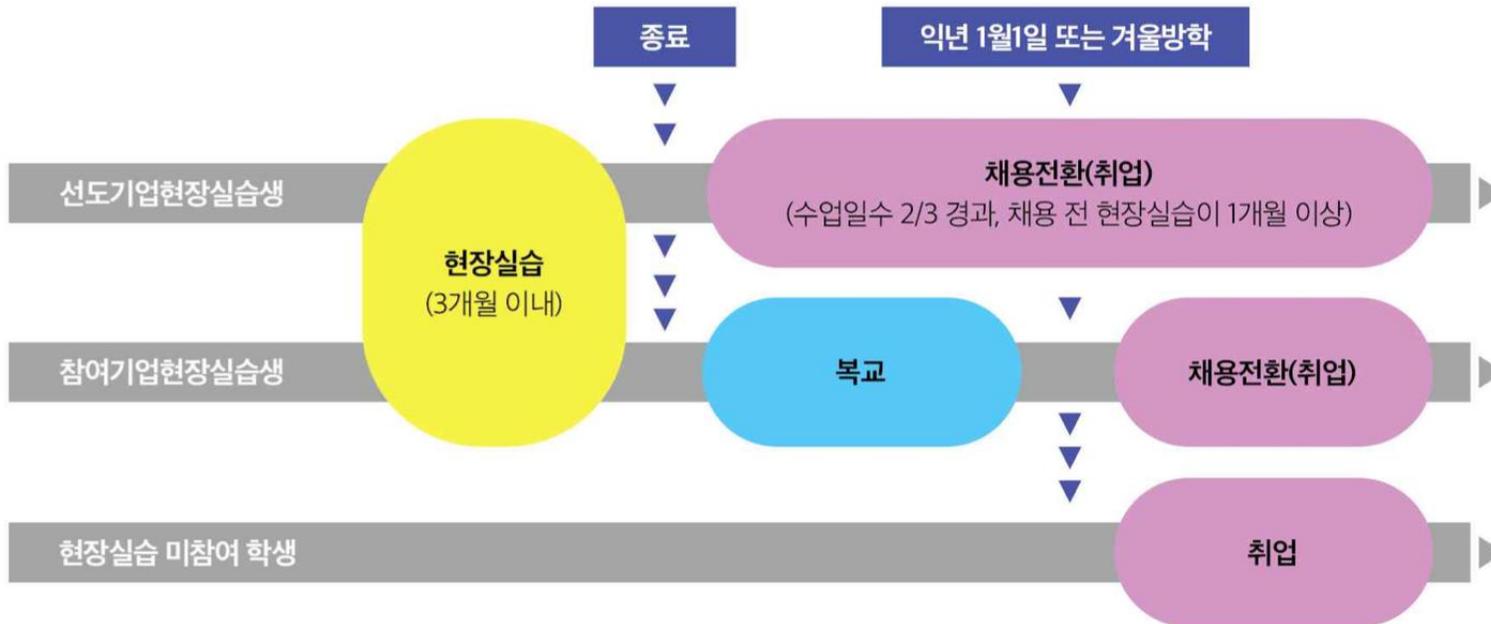


###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사 제도에 대한 적용 기준 안내

- **현장실습 제도 미적용(일학습병행법 등 자체 법령 및 제도 적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한독상공회의소가 인정하는 아우스빌둥(Ausbildung)
-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취업 맞춤형 등)**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후 실제 기업 현장에서 실습한 기간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적용
    -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전공과 일치해야 하므로 취업 맞춤형 모집 단계에서부터 전공과 일치하는지 확인
    - ※ 교내 프로그램을 산업전문가가 학교에 와서 진행한 경우 '교내 현장실습'으로 처리 가능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작성 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적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적용
    - ※ 현장실습표준협약과 근로계약은 동시에 체결할 수 없음에 유의
- **해기사,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적용**

## 현장실습 후 채용전환(취업)

- 참여기업 현장실습생은 익년 1월 1일 또는 동계방학 이후 채용으로 전환 가능 함.
- 선도기업 현장실습생은 수업일수 2/3 경과 시점부터 채용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단, 채용을 전환 전 현장실습을 1개월 이상(휴무일 제외 20일 이상) 참여해야 함.
-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도 참여기업 익년 1월 1일 또는 동계방학 이후 취업 가능함.



### 주요 변경내용

- 선도기업 채용전환시 1개월 이상의 현장실습 필수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예외 적용 삭제

## 주요변경내용 관련 QnA

###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채용전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의 경우, 채용 전환 전에 이수해야 하는 4주간(20일)의 현장실습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 기업이라고 하여 현장실습과 채용전환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4주간(20일)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만 채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한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산업체 채용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 교내 프로그램 중 기업 관계자가 아닌 학교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으로 분류하되, '교내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지도하는 것으로써 학교 교사에 의한 지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기타

부사관에 합격하여 부사관 학교에 입교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처리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하므로, 지원 가능 기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입교 후 수업일수 2/3 시점(10월 중순)까지 기간을 산정했을 때 3개월을 초과하는 기수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해기사,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계 교육형으로 처리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는 별도 서식이 없으며, 학교와 기관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시도교육청의 승인을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전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무관

학생의 안전과 준비가 최우선이 되는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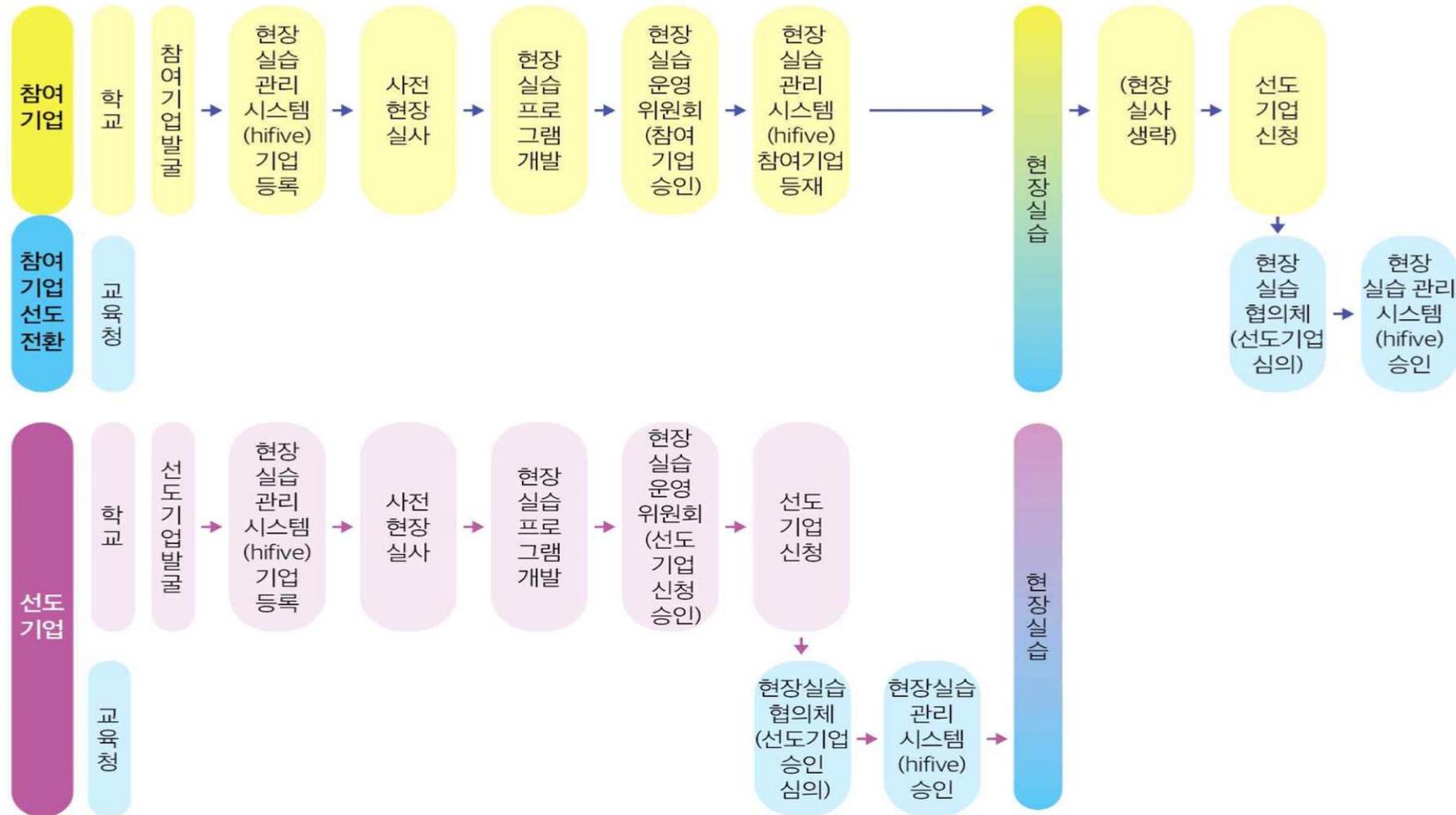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 현장실습 주요 변경 사항 안내 (현장실사, 운영위원회, 수당)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모든기업대상사전 <b>현장실사</b> 실시	◦ 선도기업 및 참여기업까지 확대하여 실시
현장실사 시 교원(취업지원관) <b>동행 불요</b>	◦ 노무사, 산업안전전문가 단독 실시 가능
현장실사에 노무사 외 <b>산업안전전문가 참여</b>	◦ 노무사 외 산업안전전문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현장실사 참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b>학생 포함</b>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포함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운영 기준 명시 - (구성) 노무사 포함 5인 이상 - (정족수) 구성인원의 2/4, 노무사 필참(단, 서면 의견으로 대체 가능) - (의결) 기업 적합 여부, 실습기간(그 외 의결 불가)
산업체 <b>방문조사 카드 필수</b> 서류화	◦ 모든 기업에 대해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를 작성하고, 기업의 적절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 - (참여기업) 학교 현장 실습운영위원회에 제출 - (선도기업)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에 제출
현장실습 수당 <b>4,400원</b> 적용	
변경 전	◦ 기업에서 부담하는 현장실습 수당 7,400원(최저임금의 70% 수준) ※ 기업:교육청:국고 = 70 : 0 : 30
변경 후	◦ 기업에서 부담하는 현장실습 수당 4,400원(최저임금의 40% 수준) ※ 기업:교육청:국고 = 40 : 30 : 30

# 실습직전 특별교육 및 입문교육 설명

## 참여/선도기업 선정 및 승인 절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분	구성 기준	정족수	의결사항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자 + 학생 등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 (신규)	구성원 2/3 이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학교현장실습운영계획 (기존)</li> <li>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기업의 적합여부 및 기간 (기존)</li> <li>기타 현장실습 운영과정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존)</li> <li>당해연도 현장실습 자체 진단 결과 (신규)</li> <li>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임 사항 (신규)</li> </ul>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노무사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구성원 1/2 이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 참여 학생,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전공 적합성, 실습 기간 등) 의 적합 여부, 실습 기간 (기존)</li> </ul> <p>→ 이외 내용에 대한 의결은 불가</p>

### 주의사항

학교 전담 노무사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단, 소위원회에 한해서 서면 의견서(현장실시 결과보고서)로 참석 대체 가능)

\* 학생 : 3학년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대표성을 갖는 학생(학생 중 선발, 학생자치회장, 기타 대표 학생 등)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 예시1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교장 (감)

나) 교원위원 : 취업진로부장, 특성화교육부장(직업교육부장), 학과[학년]부장, 특수교육부담당교사, 교육부장, 취업지원관 등

다) 학부모 위원 : 정00(00과 3-2 김00 모)

라) 산업체 위원 : 이00 ((주)△△△ 전무)

마) 관계기관 위원 : 최00 (□□시 일자리센터장), 혹은 김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 주임)

바) 학교 전담 노무사 : 함00 노무사

사) 학생대표 위원 : 양00 (학생자치회장)

아) 산업안전 전문가 : 임00(00지회)

## 현장실습 수당

- 1) 현장실습생은 산업현장 적응 기회로서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과 연계한 실무교육을 받으므로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실습수당을 받아야 함
  - 2)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므로, 근로에 따른 급여가 아닌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을 받음
  - 3) 현장실습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수당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인 시간당 최소 4,4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
  - 4) 최저임금의 60%는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보조하여 현장실습생은 최저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실습수당을 받음
- 국고 및 교육청 지원 수당은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지급

### 현장실습 비용 지원 확대(안)

연도	주체별 지원 비율		
~2021	기업		국고 30%
	70%		
2022~	기업	교육청	국고 30%
	40%	30%	

학생의 안전과 준비가 최우선이 되는 현장실습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현장실습 주요 변경 사항 안내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선도기업 자동인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기업은 예외없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승인을 거쳐 선도기업으로 인정</li> <li>※ 2022년 신규 지정부터 적용</li> </ul>
실습직전 특별교육 운영(필수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교육(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외 실습직전 특별교육* 필수 이수</li> <li>* 하이파이브온라인교육(개발중), 노무사방문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셋중택1</li> </ul>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기업 책임자 각 1명 지정 및 적시</li> <li>※ 책임자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에 서명, 개발 수당(5만원 내) 수령</li> </ul>
지난해와 동일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수당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 프로그램 지난해와 동일한 경우 개발 수당 미지급</li> </ul>
현장실습생에 대해 SNS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 모니터링 의무화</li> </ul>
현장실습 참여 기업과 다른 기업으로 채용전환 불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기업에서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참여하고, B기업에서 동일한 직무를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채용전환은 불가</li> <li>B기업에 채용전환을 하기 위해서 4주간의 현장실습을 다시 이수해야 함</li> <li>※ 비록동일한직무일지라도 B기업의 환경, 장비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응기간 필요</li> </ul>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필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보고회 필수 실시</li> </ul>

# 02

## 실습직전 특별교육 및 입문교육 설명

현장 실습생을 위한 필수 안전 교육

실습직전 특별교육 추가



#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

## 입문교육

<교육 내용 예시>

유형	교육 내용																					
입문교육	<p>기초적인 조직이해 및 업무이해에 대한 내용, 조직의 문화 및 조직적응에 대한 내용 등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은 주로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③ 사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테마를 기본으로 구성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① 조직에 대한 이해</th> <th colspan="2">② 일에 대한 이해</th> <th colspan="2">③ 사람에 대한 이해</th> </tr> <tr> <th>회사개관</th> <th>경영환경</th> <th>관련제도</th> <th>업무이해</th> <th>업무기본</th> <th>회사문화 및 조직구성원과의 관계</th> <th>자긍심 부여</th> </tr> </thead> <tbody> <tr> <td>- 비전 - 중심 가치 - 연혁 - 조직도</td> <td>- 매출 - 업계 이해 - 업계 위치 - 전망</td> <td>- 인사제도 - 복리후생 - 교육체계 - 시스템 - 각종규정</td> <td>- 부서별 업무투어 - 사업장 이해 - 직무 이해</td> <td>- 보안 등 규정 - 기간 등 문서작성</td> <td>- 회사문화 및 직장 예절에 대한 이해</td> <td>-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 자긍심 형성 등</td> </tr> </tbody> </table>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③ 사람에 대한 이해		회사개관	경영환경	관련제도	업무이해	업무기본	회사문화 및 조직구성원과의 관계	자긍심 부여	- 비전 - 중심 가치 - 연혁 - 조직도	- 매출 - 업계 이해 - 업계 위치 - 전망	- 인사제도 - 복리후생 - 교육체계 - 시스템 - 각종규정	- 부서별 업무투어 - 사업장 이해 - 직무 이해	- 보안 등 규정 - 기간 등 문서작성	- 회사문화 및 직장 예절에 대한 이해	-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 자긍심 형성 등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③ 사람에 대한 이해																
	회사개관	경영환경	관련제도	업무이해	업무기본	회사문화 및 조직구성원과의 관계	자긍심 부여															
	- 비전 - 중심 가치 - 연혁 - 조직도	- 매출 - 업계 이해 - 업계 위치 - 전망	- 인사제도 - 복리후생 - 교육체계 - 시스템 - 각종규정	- 부서별 업무투어 - 사업장 이해 - 직무 이해	- 보안 등 규정 - 기간 등 문서작성	- 회사문화 및 직장 예절에 대한 이해	-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 자긍심 형성 등															
<p>지식 위주의 내용으로 직무 및 조직적응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화된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본교육</th> <th>조직적응력 교육</th> <th>직무기본역량 교육</th> </tr> </thead> <tbody> <tr> <td> <p>(실습생 권리·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p> </td> <td> <p>- 실습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 숙지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장 예절 및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p> </td> <td> <p>-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 향상시켜줌 - 주요 사업분야별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p> </td> </tr> <tr> <td></td> <td> <p>-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기본역량 배양 - 문서작성 등 직무공통역량도 함께 배양하는 것이 필요</p> </td> <td></td> </tr> </tbody> </table>	기본교육	조직적응력 교육	직무기본역량 교육	<p>(실습생 권리·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p>	<p>- 실습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 숙지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장 예절 및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p>	<p>-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 향상시켜줌 - 주요 사업분야별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p>		<p>-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기본역량 배양 - 문서작성 등 직무공통역량도 함께 배양하는 것이 필요</p>														
기본교육	조직적응력 교육	직무기본역량 교육																				
<p>(실습생 권리·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p>	<p>- 실습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 숙지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장 예절 및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p>	<p>-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 향상시켜줌 - 주요 사업분야별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p>																				
	<p>-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기본역량 배양 - 문서작성 등 직무공통역량도 함께 배양하는 것이 필요</p>																					
<p>실무교육 (OJ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기술 습득) 등</li> <li>OJT(직무현장교육)은 일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임. 기업현장교사의 시범과 직무수행과정을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실습생들이 실질적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li> <li>기업현장교사의 멘토링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능력과 업무태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운영함.</li> </ul>																					

학습중심 프로그램 구조화

실습 유형

1. 입문교육
2. 실무교육 (OJT) 등

• 입문교육은 실습업체 및 업무 소개, 노동인권 교육,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고려하여 반드시 포함하고, 실무교육(OJT)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기술 습득) 등으로 구성

### 오리엔테이션



1. 기초적인 조직이해 및 업무 이해에 대한 내용

예시

- ① 조직에 대한 이해
- ② 일에 대한 이해
- ③ 사람에 대한 이해

2. 조직의 문화 및 조직 적응에 대한 내용

- 회사편제, 경영환경, 관련제도 등
- 업무이해, 업무기본
- 사내문화, 자긍심 부여

3. 지식 위주의 내용으로 직무 및 조직 적응과 관련한 심화내용

예시

- ① 기본교육
  - 실습생 권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② 조직적응력교육
- ③ 직무기본역량교육

### 실무교육 또는 OJT



직무와 관련된 전문내용 (기술 습득)

- OJT :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관찰하며 배우는 것
- 조직적응, 기본적인 업무매너 등의 내용을 위해 멘토링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

### 입문교육 중 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2 및 제 29조 ② 매 분기마다 실시(연4회) ③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⑥ 교육의무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최초 작업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학습자료 : 안전보건공단 2019-교육홍보-164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

-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학습자료 : 고용노동부>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정보공개>자료찾는자료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80900152](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8090015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⑤ 이미 교육을 실시하였어도 신입사원, 휴가자, 휴직자 복직 등 교육 재실시

학습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자료실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용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2회 수행 권고
-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취급자)
-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학습자료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자료미당> 교육자료 <https://www.privacy.go.kr/inf/pol/law/ruleList.do>

## 실습직전 특별교육 및 입문교육 설명

### 입문교육 시간

입문교육시간	세부 활동 내용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최소 30% 이상을 입문교육 시간으로 확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업체 업무소개, 기업특화교육 -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20% 이상</li> <li>◦ 법정 4대 의무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10% 이상</li> </ul>



# 현장실습 유형과 세부사항 변경

양식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양식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주소				
기업현장교사(직위)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0000.00.00 ~ 0000.00.00. ( 일 시간)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0일 / 0000.00.00. ~ 0000.00.00.(사유: )			
NCS 직무분야				
실습과제				
평가횟수	회	평가항목		
현장실습 시간 편성	총 시간	입문교육 (안전, 보건, 직업기초능력교육)	현장실무	
			NCS	기업특화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input type="checkbox"/> 1 : 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 : n		비전담 지도 사유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기업 담당자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담당교사와 기업담당자에게 각각 지급될 수 있으며 단, 과년도 내용과 동일한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성명	학과명
현장실습 학생		

구분	내용
실습생의 사전준비 상황	
주요 실습요구	
현장실습 목표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현장실무: NCS / 기업특화	
	NCS 세부류	능력단위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역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교사 (직위)	현장 실습생	장소	입문 교육
총 현장실습 시간							

\* 법정 필수교육시간으로 정해진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반드시 입문교육 시간 안에 편성하여 현장실습 시작 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은 입문시간으로 편성해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유형과 세부사항 변경

### 자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1개월)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00기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000번길				
기업현장교사(직위)	김00(팀장), 박00(과장), 이00(대리)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0000년 0월 0일~0000년 0월 0일. (20일 140시간)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3일 / 0000년 0월 0일~0000년 0월 0일 (자필고사)				
NCS 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02)				
실습과제	• 문서작성 • 고객관리 • 결산처리				
평가횟수	중간 및 최종평가 1회	평가항목	과제수행		
현장실습 시간 편성	총 시간	입문교육 (안전, 보건, 직업기초능력교육)	실무교육		
			NCS	기업특화	평가
	140	52	60	24	4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00상업고등학교	010-000-0000	김00	
기업 담당자	00기업	010-000-0000	김00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담당교사와 기업담당자에게 각각 지급될 수 있으며 단, 과년도 내용과 동일한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내용
실습생의 사전준비 상황	• 본교는 상업계열 고등학교로 교육과정에서 기업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위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사무행정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주요 실습요구	• 학교에서 학습한 회계과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을 희망함. • 전공 실습 전 업체 및 업무에 대한 개요, 실습일정, 보건/안전관리,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함. • 각종 사무용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업무지원, 부서 일정관리, 경비처리 등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처리를 실제 업무 내용으로 실습을 희망함.
현장실습 목표	•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전표작성 및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처리 및 관리할 수 있음. • 조직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의 구매, 유지 및 처분을 처리할 수 있음. • 내외부 업무 협력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내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음.

# 현장실습 유형과 세부사항 변경

## 자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1개월)

###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현장실무: NCS / 기업특화	
	NCS 세분류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리엔테이션</li> <li>산업안전 및 보건교육</li> <li>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li> <li>개인정보보호교육</li> <li>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li> </ul>	사무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서작성(0202030201_17v2)</li> </ul>
	창구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관리(0204030406_15v1)</li> </ul>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표관리(0203020101_17v3)</li> <li>비품관리(0202010104_19v2)</li> <li>결산처리(0203020104_17v3)</li> </ul>

###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주차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역				입문 교육	실습 교육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기업현장교사 (직위)	현장 실습생			
1주 차 (35)	입문교육 (필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 및 업무개요 소개</li> <li>실습일정 안내</li> <li>산업안전보건 교육</li> <li>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li> <li>장애인인식개선 교육</li> <li>개인정보보호 교육</li> <li>직무기본역량교육</li> </ul>	견학/강의	김OO (팀장)	최OO 정OO 강OO	회의실	10	0
				박OO (과장)				
2주 차 (35)	현장실무 (N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서작성 (0202030201_17v2)</li> <li>고객관리 (0204030406_15v1)</li> </ul>	견학/강의	김OO (팀장)	최OO 정OO 강OO	회의실	0	25
				박OO (과장)				
				이OO (대리)				
3주 차 (35)	현장실무 (N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표관리 (0203020101_17v3)</li> </ul>	실습	김OO (팀장)	최OO 정OO 강OO	사무실	10	25
				박OO (과장)				
				이OO (대리)				
4주 차 (35)	현장실무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품관리 (0202010104_13v1)</li> </ul>	실습	김OO (팀장)	최OO 정OO 강OO	사무실	15	20
				박OO (과장)				
				이OO (대리)				
4주 차 (35)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산처리 (0203020104_17v3)</li> </ul>	체크리스트	김OO (팀장)	최OO 정OO 강OO	회의실	0	4
				박OO (과장)				
				이OO (대리)				
총 현장실습 시간		140						

※ 법정 필수 교육시간으로 정해진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반드시 입문교육(필수교육) 시간 안에 편성하여 현장실습 시작 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모니터링

### 순회지도(학교)

- 학교는 현장 실습생의 실습상황, 건강,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순회 지도를 실시해야 함
  - ※ 순회지도는 학교 관리자, 교사, 취업지원관 등 현장실습 관계자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음.
- 순회지도의 주 대상은 ‘학생’이며, 순회지도 시 학생 면담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교사, 기업 대표 등 기업 관계자 면담을 필수로 포함하여 실습상황 전반에 관해 확인해야 함.
  - ※ 전화,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순회지도 불가
- 교사는 기업별로 순회지도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반드시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해야 함.
- 순회지도를 실시한 자는 순회지도 완료 후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해야 함.
- 학교는 순회지도에 대하여 현장실습 운영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모니터링

### 기업코칭(노무사)

-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장 실습생 안전 및 권익보호 조치 실행 등 코칭을 시행함.
- 학교는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코칭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노무사는 선도기업별로 기업코칭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반드시 1회 이상 방문 기업코칭을 실시해야 함.

※ 기업코칭은 노무사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사, 취업지원관 등 동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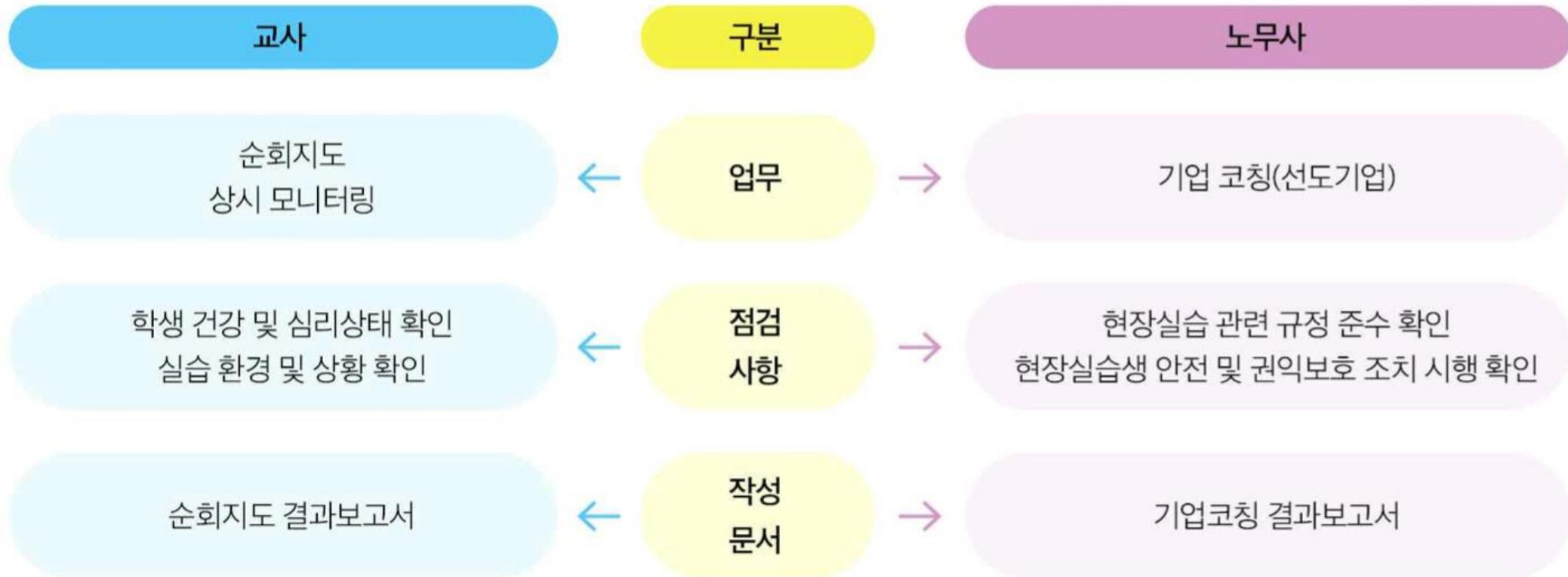
- 노무사로부터 현장실습 코칭을 받은 기업은 코칭 횟수만큼 학교의 순회지도는 생략할 수 있음.

※ 단, 학교의 전화, SN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은 상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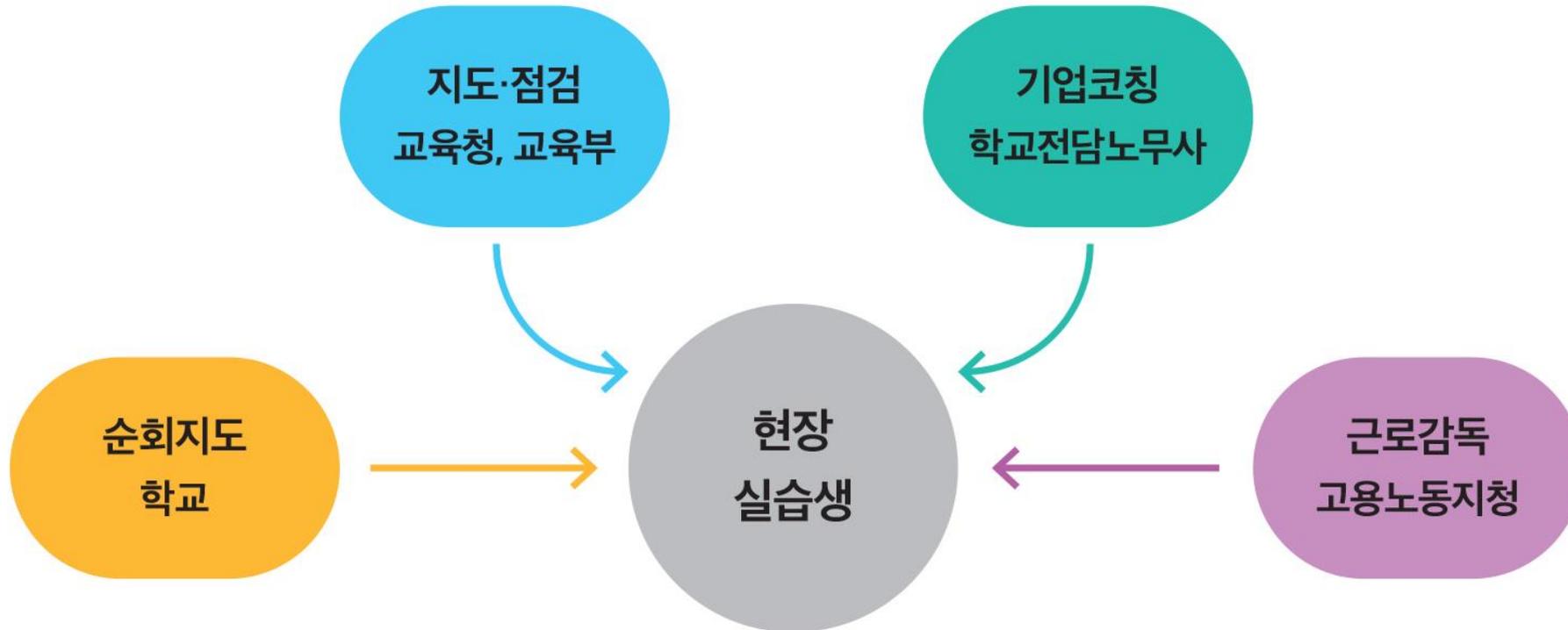
- 노무사는 기업코칭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록함.
- 학교는 필요에 따라 노무사를 추가 활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모니터링

### 교사와 노무사의 역할 구분



##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지원

###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사유에 따른 조치 방법

사유	조치 방법
협약내용과다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미반영 시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권익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조치 후 근로감독 요청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실습 중단을 요청한 경우	학생 상담 및 기업 협의를 진행한 후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교 여부 결정 현장실습 복교사유서를 통해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지원

###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시 조치 순서

#### ① 위반 내용 확인

- 시간초과, 휴일·야간 실습 확인
- 현장실습계약미체결 또는 표준협약서미사용
- 주요사항 미준수 등

학교

#### ② 복교 및 시정요청

- 확인 즉시 실습생 복교 조치, 위반사항을 기업에 통보 및 시정요청
- 학부모 통지, 상급기관에 사안 보고

학교

#### ③ 근로감독 요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위반사항 통보, 근로감독 요청
- 야간실습, (성)폭력 등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 동시 진행
- 상급 기관에 사안 보고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 ④ 모니터링

- 근로감독 진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 근로감독 회신 결과 등 사안 보고
- 학생 및 학부모 보호·지원

학교,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 ⑤ 고발

- 근로감독 결과 벌칙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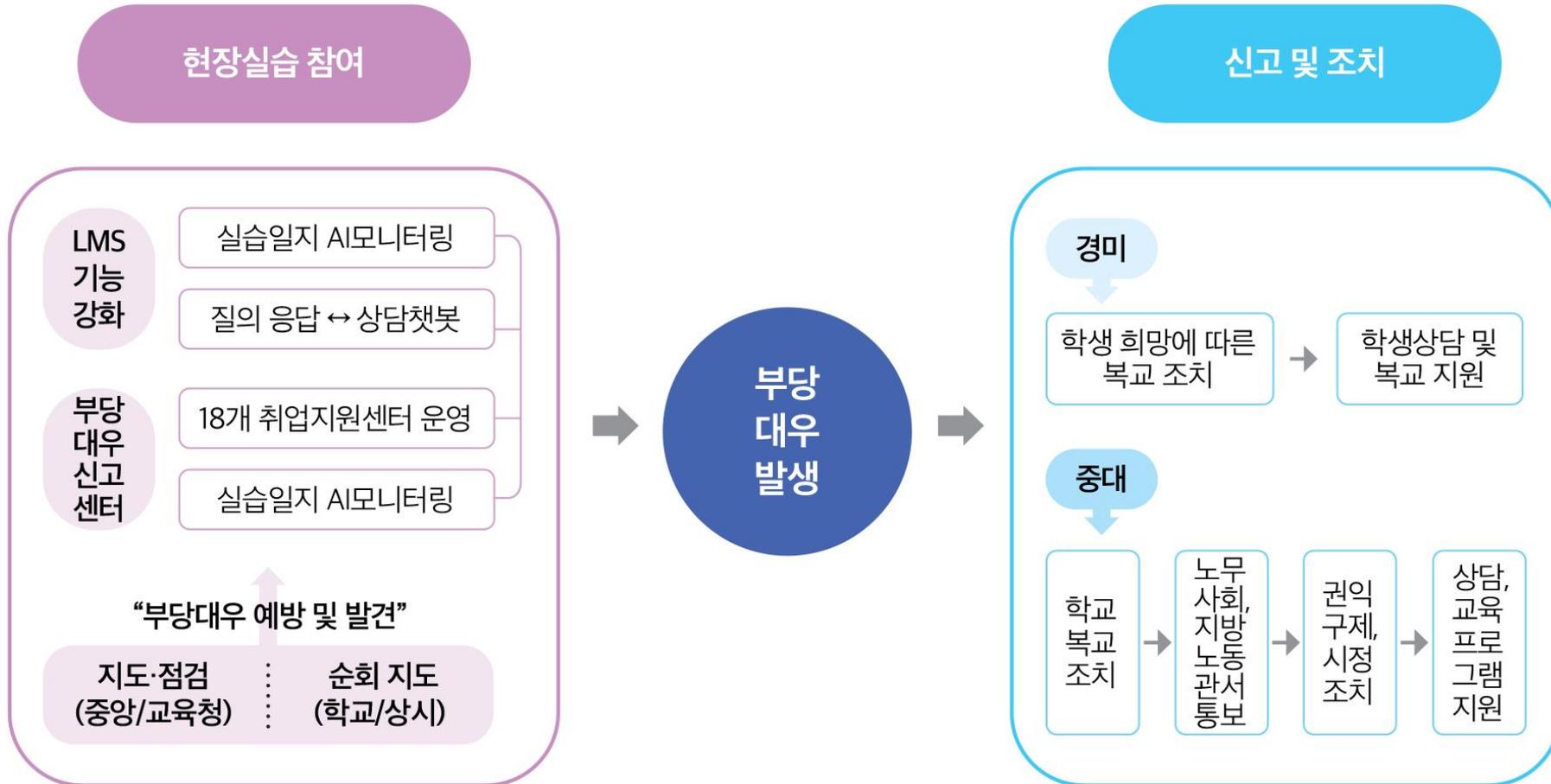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 ⑥ 최종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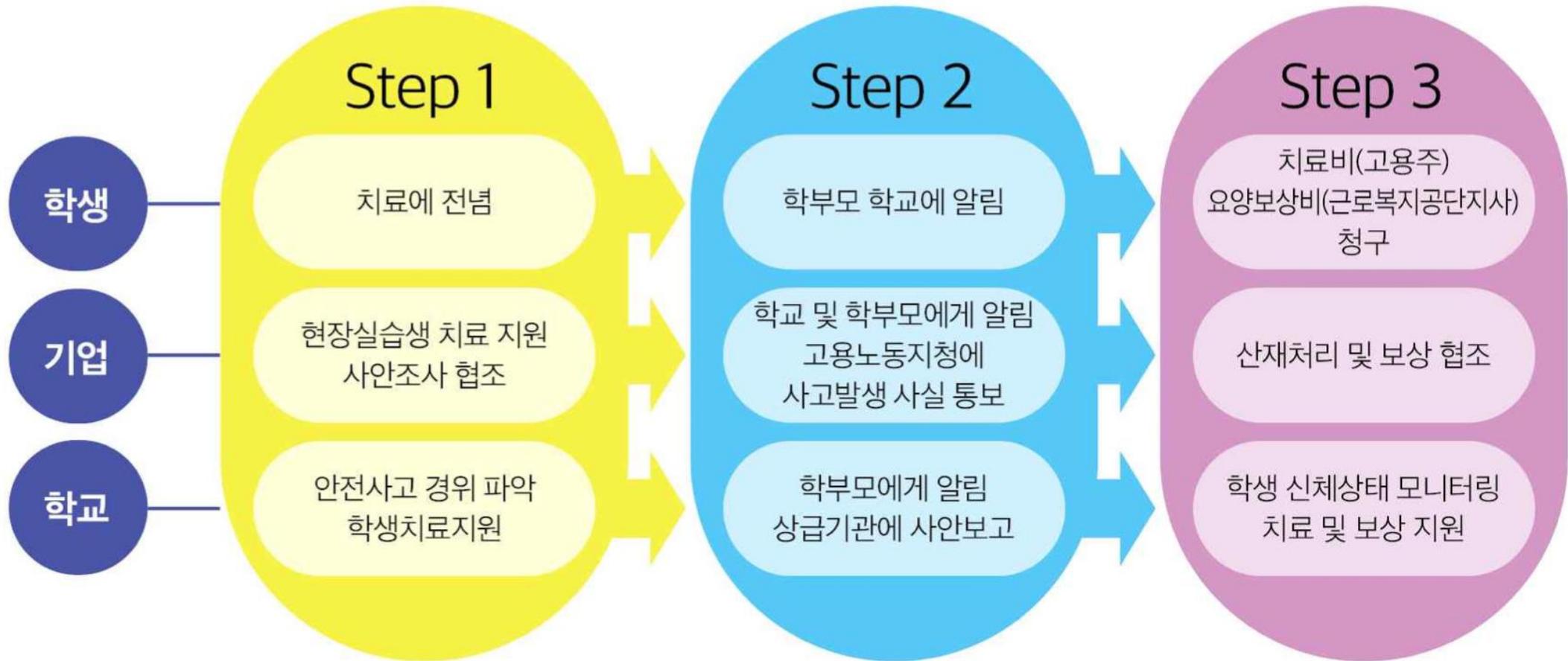
-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경찰수사 결과, 법원 판결 등 최종결과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
- 상급기관에 최종결과보고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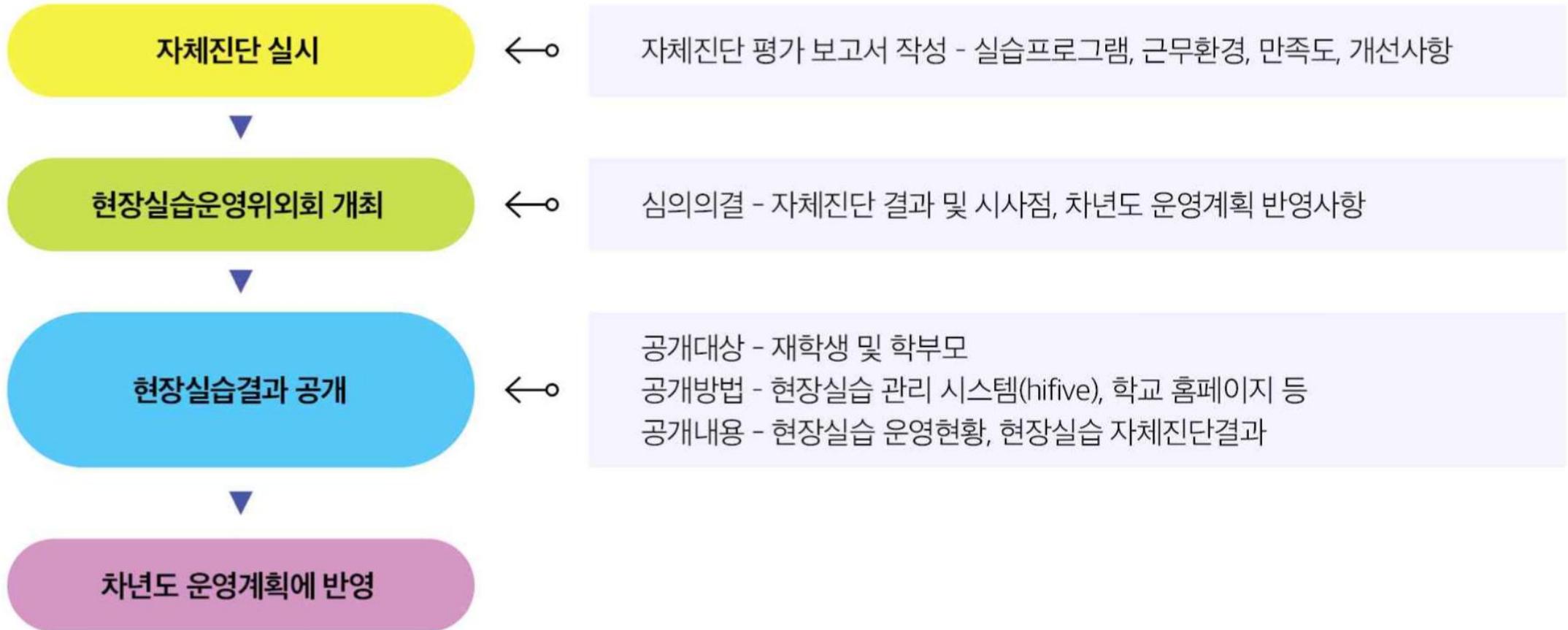
#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 안전사고 처리 절차



## 현장실습 종료 후 자체진단 실시 및 피드백



## 현장실습 종료 후 자체진단 실시 및 피드백

[ 현장실습 운영 환류 체계 ]



자체 진단 결과 활용을 통해 차년도 계획 수립

학생의 안전과 준비가 최우선이 되는 현장실습

# Q&A



# THANK YOU

2022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안내